

상 품 : 제2010-151호

2010. 7. 1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 공시 안내

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3항에 의거 당사에서 운용중인 투자신탁에서 보유중인 신탁재산의 부실이 발생하여 그 명세 및 상각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대상투자신탁 : 첨부 참조
2. 처리방법 : 수시공시
3. 공시사유 : 부실자산의 발생 및 상각
4. 공시내용 :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(첨부)

첨 부 : 투자신탁별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

2010. 7. 1

하나UBS자산운용(주)

대표이사 진 재 욱



수신처 : 하나은행, 하나대투증권, 교보증권, 현대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골든브릿지투자증권, 대우증권, 우리투자증권, 푸르덴셜투자증권

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

1. 관련규정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(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) 제1항
- 나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(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) 제2항
- 다. 금융투자업규정 제7-35조(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)

2. 상각사유

- 투자신탁에서 보유중인 중소기업제15차유동화전문(유) 제1-10회 및 제1-11회의 정상적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

3.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 : 첨부 참조

4. 상각일자 : 2010. 7. 1(목). 끝.